

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안

□ 제안이유

- 지방양여금 대상사업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내부부에서 시달된
준칙에 의거 충청북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기 위함.

□ 주요골자

- 이 회계의 세입은
 - 지방양여금
 - 일반회계 전입금
 - 이월금, 차입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함.
- 이 회계의 세출은
 - 도로정비사업
 - 농어촌지역개발사업
 - 수질오염방지사업
 - 청소년 육성사업에 한함.

충청북도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양여금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양여금 대상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(이하 "회계"라 한다)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세입)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금으로 한다.

1. 지방양여금관리 특별회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여된 지방양여금
2. 타 회계 전입금
3. 이월금, 차입금 및 기타 수입금

제3조(세출)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

1. 도로정비사업
2. 농어촌지역개발사업
3. 수질오염방지사업
4. 청소년 육성사업

제4조(지방채발행등) ① 이 회계는 세출재원이 부족한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.

② 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.

제5조(잉여금의 처리)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한다.

제6조(준용) 이 회계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